

하나미국대표지수40밸리드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펀드코드 : EH641]

투자 위험 등급 4등급 [보통 위험]						하나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환율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핵심위험에 대해 투자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하나미국대표지수40밸리드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전략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미국지수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및 국내 채권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등의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분산 투자하여 자산배분 전략을 수행합니다. 미국지수관련 ETF에 투자신탁재산의 40% 내외, 국내 채권 관련 ETF에는 60% 내외의 범위에서 투자하되, 정량, 정성 분석을 종합하여 비중을 조절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 국내 상장된 미국지수관련 ETF 투자전략 투자신탁재산 중 일부는 미국을 대표하는 S&P500지수를 추종하는 한편, 일부는 혁신과 성장을 주도하는 나스닥(NASDAQ)100에 투자하여 포트폴리오의 장기 성장성을 제고합니다. - 국내 채권 ETF 투자전략 주식 관련 ETF를 제외한 잔여 투자신탁재산은 국내 채권 관련ETF에 투자함으로써 주식 투자 대비 안정적인 이자 수익 및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축소를 추구합니다.
	[위험관리] 1)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업자 및 펀드매니저의 운용전략의 일관성, 투자전략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 펀드매니저와의 면담 및 운용보고서 등의 자료분석을 통한 운용현황 및 전망을 파악합니다.

	* 연평균 수익률은 과세전 수익률이며,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구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별도로 표시한 기준일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종류C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전문 인력	(2026년 08월 24일 기준)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재간접형_해외, %)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책임	염보선	1988	차장	11	4,592	17.69	-	14.91	14.12	9.3년
	부책임	이다은	1991	차장	28	6,119	16.13	12.46	14.91	14.12	2.6년
	부책임	김진우	1996	대리	-	-	-	-	14.91	14.12	-
	* “책임운용전문인력”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적을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적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 기준일 현재 동 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없습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에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및			집합투자재산을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								

개별위험	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채권 등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TF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 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에 주로 투자합니다. 일반적으로 ETF는 상장폐지위험, 추적대상지수에 대한 추적오차 발생위험, 거래규모 및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른 유동성위험, 종가와 순자산(NAV)의 괴리위험, 설정/환매 시 세금 부담위험, 추적대상지수의 산출방식 변경 및 중단위험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펀드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에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를 편입하는 경우 동 ETF 매매에 대한 과세처리 방법으로 인해 매매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해당 매매에 적용되는 과표 기준가격이 상승하여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리밸런싱 (Rebalancing) 위험	주식 및 채권 등의 자산 가격 급등락으로 관련 ETF의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할 경우 편입비 조절이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어려워 기본 전략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발행회사 또는 단기금융상품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도하락, 채무불이행,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해외 자산에의 투자는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 간의 환율변동에 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해외투자자 인 환율변동 위험 제거를 위한 환헤지 전략은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이후 환율 변동으로 인한 급격한 신탁재산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증권 가격상승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통화의 가치가 더 크게 하락할 경우 오히려 투자원본의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투자증권의 가격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해당 통화가치의 하락이 펀드의 손실폭을 더 확대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환율변동위험이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인 사건 및 투자대상국가 및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적인 제반사건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재간접투자 위험	주요 투자대상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 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피집합투자기구를 직접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피집합투자기구가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이 투자신탁에 대한 운용관련 규정을 벗어나서 운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는 사전예고 없이 상환되거나 해지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이 투자신탁이 추구한 투자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투자대상인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규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하는 경우 환매수수료가 발생하여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으며,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입과 환매 시에 적용되는 기준가격과 집합투자증권에서 실제로 투자하는 자산의 가치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특히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산에 반영되는 시차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 15시 30분 이전 : 2영업일 기준가 매입 · 15시 30분 경과 후 : 3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 방법	· 15시 30분 이전 : 2영업일 기준가 4영업일 지급 · 15시 30분 경과 후 : 3영업일 기준가 4영업일 지급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	· 산정 방법 -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 = (직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직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공시방법 - 서류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과세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연금저축계좌의 세제(연금저축 종류 수익증권만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별도의 과세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부 사항은 “연금저축계좌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퇴직연금 전용 종류 수익증권만 해당):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하나자산운용 대표전화 : 02-3771-7800, 홈페이지 : www.hanaam.com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10조원, 1좌단위 모집)
효력발생(예정)일	2026년 09월 11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hanaam.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의 관한 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수수료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판매경로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무권유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타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타	퇴직연금(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타	기관(F) 수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1)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2) 법시행령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3)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나 500억 이상 매입한 법인
	기타	랩(W) 판매회사의 일임형랩어카운트계좌, 특정금전신탁 등에 해당되는 경우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anaam.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aam.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aam.com)